

목록

3. (2221)(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3. 운영_ 심사보고서(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1
----------	------

발의연월일: 2024. 5. 17.
발 의 자: 고 상 순 의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사후정산하여 출장여비 지급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 정산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5. 25. ~ 5. 27.)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략)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삭제> 1. ~ 7.(현행 제2호에서 제8호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박진규(2049-4634)

< 관 계 법 령 >

법규명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개정정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6.16.>]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의2로 이동 <2023.6.16.>]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3.6.16.>]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진구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고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21호)

2024. 6. 10.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21호
- 나. 발 의 자 : 고상순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년 5월 17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5월 27일
- 마. 상정일자 : 2024년 5월 28일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사후정산하여 출장여비 지급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내출장 정산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5. 25. ~ 5. 27.)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2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고상순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¹⁾에서는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했으나, 우리 의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10.)를 받은 상태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제1호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1)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개선하고자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사후정산하여 출장여비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